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적용제외

- ①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 ②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월평균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예: 사립대학 교수), 외국인 제외(단, F-6 가, 나 / F-2 다 / F-4 / F-5 대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피보험자격의 구분

계약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은 일반예술인, 1개월 미만은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예술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반예술인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 신고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

•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허용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중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다른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임

• 보험료 부담 : 보험료율 1.6%(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 부담)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보험료 산정·부과

- 산정방법 : 월별보험료=(예술인 개인별 월평균보수×1.6%)의 합산액
 - ▶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단, 해당연도 취득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
 - ▶월 평균보수 산정방법 : 월 평균 지급 예정금액 × 80%
- •예외 :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80만원)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적용

•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구직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기초일액의 60%(1일 상한액 66,000원), 120~270일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전후 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유발생일 전후 소정기간 동안 노무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 출산전후 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방송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안내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방송분야에 대한 적용범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 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약,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창작분야

(극본/대본)작가, 드라마크리에이터 등. (음악) 작곡가, 오퍼레이터. A&R. OST 제작PM 등

• 실연분야

방송분야 적용대상 직종 예시

(연출)감독, FD, 스크립터(SCR), 캐스팅디렉터, 스토리보드, 로케이션 매니저 등, (출연)배우(주연, 조연, 단역, 특별출연, 성우 등),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 기술지원분야 : 방송분야에서 창작 및 실연을 제외한 참여자를 의미
 - (기획)기획PD, 제작PD, 라인PD, 마케팅PD, 제작관리, 해외코디네이터 등 (단. 홍보 및 마케팅 분야는 제외)
 - (기술지원) 촬영, 조명, 장비, 녹음, 특수효과, 미술, 무대, 소품, 의상, 분장, 편집, 음향, 녹음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 신규매체 종사자 등 판단 기준

유튜브, 팟캐스트, 카카오TV, 네이버TV, OTT 등 새로운 매체로 전송하는 문화예술 프로 그램 제작 종사자도 적용대상임

• 일반인 출연자

원칙적으로 일반인 출연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인 출연자 중예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정출연자에 대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송분야 적용대상 판단 유의사항

- *일반인: ①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②연예인(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 *고정출연자: 방송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담당하는 등 일정 정도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자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임